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구합1241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 고	1. A
	2. B
	원고들 소송대리인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20. 5. 19.
판 결 선 고	2020. 7. 7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10. 22.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,543,1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들은 [redacted]시 C 토지와 지상 4층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매수하여 2018. 7. 27. 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락시설 411.39㎡(이하 '이 사건 점포'라 한다)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,013,370원, 지방교육세 1,433,770원, 농어촌특별세 3,584,440원, 합계 48,031,58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원고들은 2018. 8. 13.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취득세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경정하되, 다만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으로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8. 10. 22.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, 경정통지일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신청이 반려된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2019. 2. 27.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5, 6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

가. 원고들의 주장

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중과대상인지 모르고 취득하였다가 바로 용도변경을 시작하였다.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30일을 도과하였고,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은 후 바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완료하였다. 원고들이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 원고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,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인정사실

1) 이 사건 점포는 2012. 11. 20.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(주점영업)로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. D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'E'이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.

2) 원고들은 2018. 8. 8. D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, D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소송절차에서 2018. 12. 11. D은 원고 B으로부터 2018. 12. 31.까지 합계 13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.

3) 원고들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한 피고는 2018. 8. 22.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, 이 사건 점포는 무도장으로서의 설비를 그대로 갖춘 채 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후 D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, 소파, 바닥의 판넬, 카운터 설비 등을 철거한 뒤 원고들에게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 등 일부 인테리어 설비와 간판은 철거되지 않았다.

4) 원고들은 2018. 8. 21.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위락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(용도변경)를 하였다. 피고는 2018. 8. 27., 2018. 10. 1.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부설주차장의 지목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이 보완을 하지 않았고, 피고는 2018. 10. 15.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.

5)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고, 외부의 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공실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, 6, 7, 10호증, 을 제2, 8, 10,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라. 판단

1)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두23938 판결 등 참조). 다만,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,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,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,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 참조).

한편,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(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때에 이 사건 점포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고,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이 명백하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내에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,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①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점포를 위락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의사가 없었다(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다가 이 사건 점포가 중과세 대상임을 알고 나서 비로소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다).

②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후인 2018. 8. 22.에도 이 사건 점포는 무도장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.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일부 시설이 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거되고 이 사건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로 무도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, 다시 무도장으로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.

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신고를 한 후 피고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.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.

④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변경되지 않았다.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점포에서 무도장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별지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(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(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, 별장·고급주택·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.

4. 고급오락장: 도박장, 유흥주점영업장, 특수목욕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. 다만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28조(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)

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.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.

4.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(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)

가.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(카바레·나이트클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1

·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). 끝.